

별첨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장소	□ 입원 (병원)	□ 생치 (생활치료센터)				
	□ 자가 (□ 재택환자(명)	□ 동거인 격리자(명)	□ 기타(명)				
입원 · 격리자	성명	신청인과 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입원·격리 통지기간	격리구분	지원제외대상 여부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신청인명의)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시 생략 가능) 3.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확인 (체크)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기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기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표 등·소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김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 재활용품)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시행 2022. 2.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3호, 2022. 2. 14., 일부개정]

제1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73,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하되, '가구구성원 수'는 '가구내 격리자 수'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0호, 2022.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한다.

<참고>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2021. 12. 31., 일부개정]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이하 생략>

참고3

입원·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입원 · [] 격리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입원 · 격리 사유		
입원 · 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 병원 · 의원(주소) 입원 · 격리 장소	[] 자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卷之三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제2호]

위임장

위 임 자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임 명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

二〇一九年

위임 받은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 재활용품)

[서식 제6호]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민간 사업장, 공공기관 공통)

사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기간 (근로자)	입원·격리시작일	입원·격리해제일

우리 기관은 위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향후 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직인)

210mm × 297mm, 일반용지(60g/m², 재활용품)